

제 287회 정례회
교육위원회

서울특별시교육청
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(황인구 의원 대표 발의)

제 안 설 명

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황인구
(더불어민주당, 교육위원회)

-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,
황인구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
「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,

-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본 조례안은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통일
역량 강화 노력이 전개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육·학예
분야의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 시대 개막에
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구체적으로는 안 제2조와 제4조, 제5조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남북
교육교류협력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. 또한, 안 제3조에서
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.

- 안 제6조를 통해 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해 규정
하였으며, 안 제7조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과
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와
운영,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4조에서 제17조를 통해

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제도화하여 교육교류 협력의 민간참여 활성화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.

-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